

의안번호	제133호
의 결 연 월 일	2019 월 일 (제 회)

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9년 2월 26일

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3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2. 26.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‘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운영’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탁기관 : 안전교육에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
- 사업대상 : 유치원 및 초.중.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
- 위탁범위 :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학교안전교육 전반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계약일로부터 9개월(2019. 3월~ 2019. 11월)
- 위탁사업자선정방법 : 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
- 총사업비 : 163,579천원(교육비특별회계 100%) * 연도별 변동
- 위탁주요사무
 -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
 - 학생 안전교육 강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
 - 찾아가는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

3. 참고사항

- 위탁현황

- 2017. 9. ~ 2018. 2. / 사회적기업 (주)새움
- 2018. 3. ~ 2018. 11. / 사회적기업 (주)새움

- 관계법령

- 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관련공문

- 체육보건안전과-37927(2018.12.28.)

- 붙임 : 2019.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 계획

- 충청북도교육청 2019.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운영 -
민간위탁 운영 계획

2019.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계획

〈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〉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심폐소생술* 수행 능력 강화 필요

* 「학교보건법」 제9조의2('13.12.30.) 규정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('17년부터 매년)
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조(학교안전교육의 실시),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교육부의 「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(제2016-90호, '16.3.15.)」에 따라 7대 표준영역에 대한 연간 51차시 이상 안전교육을 의무화*하여 실시하고 있으나

*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

(단위: 단위활동, 차시)

구 분	생활안전 교육	교통안전 교육	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	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	재난안전 교육	직업안전 교육	응급처치 교육	
교육 시간	유	13	10	8	10	6	2	2
	초	12	11	8	10	6	2	2
	중	10	10	10	10	6	3	2
	고	10	10	10	10	6	3	2
횟수	학기당 2회 이상	학기당 3회 이상	학기당 2회 이상	학기당 2회 이상	학기당 2회 이상	학기당 1회 이상	학기당 1회 이상	

-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안전교육 전문가 자원의 부족으로 내실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
- 현장 지원 중심 안전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체험위주 안전교육 실시 및 일선학교의 업무부담 완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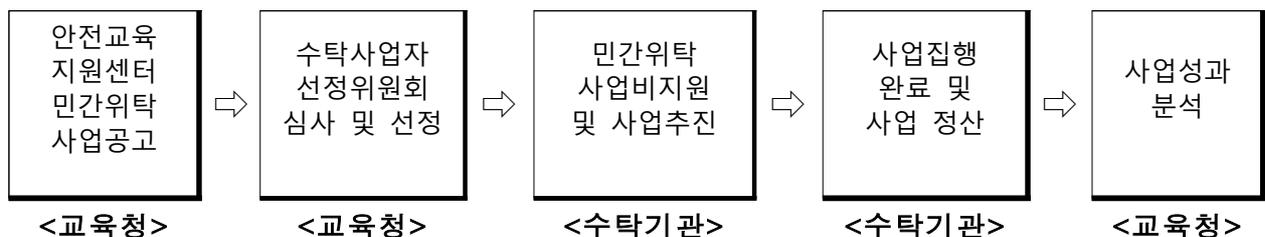
□ 추진근거
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조(안전교육의 실시)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 내지 제16조
- 2019. 주요업무계획 4-3-1. 체험 중심 안전교육

□ 기본방향

- (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지원)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교육 지원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 대응능력 강화
- (체험중심 안전교육 지원체제 구축·운영) 학교부담 완화와 내실 있는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교육 전문가 인력풀 제도 운영 및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지원체제 구축·운영
- (안전교육 지원 센터 운영) 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‘학교 안전교육 지원 센터’ 운영

□ 추진방법 : 민간위탁 (공모방식에 의한 계약)



□ 사업기간 : 2019. 11월까지

□ 사업비 : 163,579천원

※ 사업비 세부내역은 ‘학교 안전교육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산출내역’ 참조

□ 세부사업 추진계획

○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

가. 기 간 : ' 19. 11월까지

나. 대 상 : 초·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직원*

*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대상자 : 교원(기간제교사 포함), 학교운동부 지도자, 스포츠 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, 행정실 일반직 공무원

다. 교육 인원 및 편성 : 2,000명(40명 단위, 50회 편성)

라. 교육내용 및 시간, 강사

내 용		시 간	강 사
이론 교육	1) 응급상황 대처요령 2)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	2시간	가) 의사(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) 나) 간호사(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*으로 한정한다) 다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(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)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
실습 교육	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	2시간	
비고 1.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·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. 2.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.			

○ 학생 안전교육 강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

가. 기 간 : 2019. 11월까지

나. 대 상 :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

다. 절 차 : 안전교육 7대 표준영역 강사인력풀 구성 ⇨ 학교별 안전교육 신청(강사요청) ⇨ 안전교육 실시(강사지원) ⇨ 강의수당 지급

라. 내 용 : 안전교육 7대 표준영역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, 홈페이지 지원신청 시스템 구축 후 학교 강사지원

※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

구 분	세부내용
생활안전	시설 및 제품이용 안전 실험실습 안전 신체활동, 여가활동, 유괴 및 미아사고 안전
교통안전	보행자, 자전거, 오토바이, 자동차, 대중교통(선박,항공,철도 등)
폭력 및 신변안전	학교 폭력, 언어폭력, 사이버폭력, 집단 따돌림, 성폭력, 아동학대, 자살, 가정폭력
약물,사이버 안전	흡연,음주, 고카페인 식품 안전, 의약품, 유해물질 안전, 인터넷게임중독, 스마트폰중독 등
재난안전	화재, 폭발,붕괴, 테러, 홍수, 지진, 대설 등 자연재난, 소화기 사용
직업안전	직업안전 의식, 직업안전 문화, 산업재해, 직업병, 보호구 착용 등
응급처치	기본 응급처치, 심폐소생술, 자동제세동기 사용, 기도폐쇄, 상황별 응급처치

마. 교육기준

- 100회 실시 (학급 단위, 학년 단위, 전체 학년 등 집합교육)
- 소요시간 : 1회 2차시 운영 기준으로 교육내용 편성

※ 지역, 학교급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 학교 선정

※ 일선 학교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전문가 강의신청 후 학생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

○ 찾아가는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

가. 방 법 : 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한 방법에 의하여 추진하되,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추진

※ 2019년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업 : 게임으로 하는 안전교육, 안전체험관 탐방, 안전체험 캠프

나. 기 간 : 2019. 11월까지

다. 대 상 :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(120회, 3,600명 예정)

※ 지역, 학교급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 학교 선정

라. 안전체험교육 분야 : 안전교육 7대 영역 중심으로 운영

□ 기대효과

- 전문강사를 통한 교직원들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로 위기 대처능력 신장 및 학생 안전 도모
- 체계적인 안전교육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안전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전교육 효과 극대화